

시 행 세 칙

制定 1992. 11. 27.(理事會 承認)
改定 1994. 10. 28.(理事會 承認)
改定 1998. 9. 25.(理事會 承認)
改定 1998. 11. 27.(理事會 承認)
改定 2002. 10. 25.(理事會 承認)
改定 2005. 12. 23.(理事會 承認)
改定 2007. 02. 23.(理事會 承認)
改定 2008. 09. 26.(理事會 承認)
改定 2012. 12. 28.(理事會 承認)
改定 2015. 02. 27.(理事會 承認)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공학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2 조 (회원가입) 본 학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정회원 1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입회금 및 당해년도 회비를 첨부 제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 3 조 (회원관리) 제 2조에서 인준된 회원에게는 입회통지를 하고 회원명부 등 필요한 장에 등록한다.

제 4 조 (회원의 구분) 각종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정관 제 6조 1항에 준함
2. 특별회원 : 참여 정도에 따라 연회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등 4종류로 구분한다.

제 5 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세칙 제 35조에 정한 회비를 매년 3월 이전에 본 학회 사무국에 납부하므로써 정관 및 제 규칙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6 조 (단체명, 대표자의 변경)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은 그 단체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 되었을 때에는 즉시 본 학회 사무국에 통지 하여야 한다. 단, 이를 이행치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본 학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 7 조 (분리, 합병으로 인한 자격) 회원인 단체가 분리하거나 타 단체와 합병할 때에는 신자격을 위한 신청을 본 학회 사무국에 하여야 하며, 그 자격 인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8 조 (정권·제명)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자
2. 본 학회 정관 및 세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3. 본 학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 9 조 (정권·제명의 통지)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권·제명 또는 탈퇴가 승인 되었을 때에는 회원 명부 등 필요한 장부에서 삭제하고 탈퇴자에게 통지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는 정관 제 13조에 의한다.

제 11 조 (직무의 구분) ① 회장 및 부회장 이외의 이사는 직무별로 구분하며, 그 명칭은 다음과 같다. 총무이사, 편집이사, 학술이사, 사업이사, 국제협력이사

② 산학협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산학협력이사를 추가하여 둘 수 있다.

제 12 조 (회무의 분담) 본 학회의 회무는 다음과 같이 각 이사가 분담하고,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총무이사 : 인사, 문서, 서무일반, 기획, 섭외, 예산, 결산, 금전보관 및 출납, 각종 회의록 작성 등.
2. 사업이사 : 조사, 평가, 좌담회, 견학 등 산학협동에 관련한 사업의 계획 및 집행.
3. 편집이사 : 학회지 및 논문집의 편집,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따른 모든 사항.
4. 학술이사 : 학술대회, 세미나, 강습회 등 학술사업에 관련한 계획 및 집행.
5. 산학협력이사 :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제협력이사 : 국제화에 관한 사항.

제 13 조 (회무의 보고) 각 이사는 회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평의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회무의 인계) 임기종료로 인하여 임원의 이취임 시 신·구 임원은 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회무 인계·인수를 본 학회 사무국에서 행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 15 조 (구성)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의결권을 갖는다.

제 16 조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정관 제 25조에 의한다.

제 17 조 (회의) 이사회는 매월 1회 정기 개최하되, 회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회장이 수시 소집 할 수 있다.

제 18 조 (자문 및 건의) 본 학회가 자문에 응하거나 건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 5 장 평 의 원

제 19 조 (평의원 선출) 평의원의 선출은 정관 제 22조에 의하여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며, 평의원의 수를 120명 이내로 한다.

제 20 조 (회의) 평의회는 년 2회 개최하며, 회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회장이 수시 소집 할 수 있다.

제 6 장 위 원 회

제 21 조 (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 정관 제 21조 및 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개 이내의 학술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될 시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22 조 (위원장) 제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 23 조 (위원) 제 위원회는 간사 약간명과 위원을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제 24 조 (임무)** 제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의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단, 그 외의 사업을 추진코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 25 조 (권리)** 제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 제 26 조 (특별위원회)**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업 또는 그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위원장은 이사회에 결의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 7 장 사 업

- 제 27 조 (학회지 및 기타도서의 간행)** 본 학회는 매년 4회 이상 학회지를 발행하며, 이사회에 결의에 의하여 학회지 이외의 도서를 간행 할 수 있다.
- 제 28 조 (간행물의 내용)** 학회지에는 기획기사 및 연구논문, 본 학회의 사업 및 회무에 관한 제반 내용, 기타 해당 된다고 인정되는 기사 및 광고 등을 게재한다.
- 제 29 조 (간행물의 배포)** 학회지는 전회원에게 1부씩 무료로 배포한다. 기타 간행물의 배포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학회지, 기타간행물을 적당한 대가로 희망자에게 배포 할 수 있으며, 그 대가는 이사회에서 정하되 회원에 대해서는 우대한다.
- 제 30 조 (간행물의 기증)** 학회지, 기타 간행물의 기증처 및 기증부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 31 조 (학술대회)** 본 학회는 매년 춘·추계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그 내용은 학술논문, 기술 논문, 연구사례, 신기술 소개, 연구동향, 연구애로기술 등을 발표한다.
- 제 32 조 (세미나)** 본 세칙 제 23조와 관련하되, 그 내용은 신학문 등을 해설 형식으로 강연 한다.
- 제 33 조 (강습회)** 소음과 진동에 관련된 학술, 기술, 사례 등의 내용으로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계획·집행 하며, 수강료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 34 조 (조사·평가 사업 등)** 본 학회는 타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요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평가 등의 사업과 기타 필요한 행사를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제 8 장 회 비

- 제 35 조 (입회금 및 회비)** 각종 입회금 및 회원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입 회 금
 - (가) 정 회 원 : 10,000원(재 외국정회원은 별도로 정함)
 - (나) Fellow 회원 : 없음(기부금 환영)
 - (다)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은 별도로 정함.
 2. 년 회 비
 - (가) 정 회 원 : 50,000원(재 외국정회원은 별도로 정함)
단, 학생신분(재학증명서 제출자로 전일제 석·박사 과정)일 경우는 30,000원으로 함.
 - (나) Fellow 회원 : 종신회비
 - (다) 단체회원 : 200,000원 이상
 - (라) 특별회원 :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상
- 제 36 조 (종신회비)** 정회원이 회비를 일시에 납부코자 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년 회비의 15년분을 납부 함으로써 매년 회원 회비가 면제된다.
- 제 37 조 (회비의 환불)** 기 납부된 모든 회비 및 납입금은 일체 환불치 않는다.

제 9 장 명 예 회 원

제 38 조 (명예회원의 추천) 정관 제 6조 3항에 의한 명예회원의 추천은 정회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피 추천자의 약력과 추천 이유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평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제 39 조 (명예회원의 결정) 명예회원은 제 38조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평의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

제 40 조 명예회원으로 추대된 자는 회비의 납부를 요하지 않으며, 정회원의 권리를 갖는다.

제 10 장 감 사

제 41 조 (권한)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 42 조 (임무) 감사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전후하여 회무전반에 관한 내용을 감사한다.

제 11 장 전 임 회 장

제 43 조 전임회장은 이사회, 평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며, 결의에 참가 할 수 있다.

제 12 장 분 회

제 44 조 (구성) 정회원 5인 이상이 있는 직장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45 조 (분회장) 분회에는 분회장 1인을 두되, 분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 46 조 (분회장 임무) 분회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

1. 분회원의 관리 및 의견수렴을 하여 사무국에 전달
2. 학회지 및 기타 우편물의 배포
3. 소속 분회원들의 회비를 징수하여 사무국에 납부 등

제 13 장 포 상

제 47 조 (학회상) 본회는 소음 및 진동공학에 관한 학문과 기술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다. 학회상은 공로상, 학술상, 기술상으로 구분한다.

제 48 조 (특별상) 본회는 소음 및 진동공학에 관한 학문과 기술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하고, 상의 제도 목적에 적합한 자에게 특별상을 포상할 수 있다.

제 49 조 (포상내규) 학회상 및 특별상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14 장 보 칙

제 50 조 (회의록) 이사회, 평의위원회, 총회의 의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 51 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이사회에서 수시 정한다.

부 칙

본 세칙은 199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